

조정위원회 세칙

제1조 설치목적

본 규정은 한국프로축구연맹(이하 "연맹")에 가입 및 등록된 구단, 선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분쟁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절차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~~본 규정은 한국프로축구연맹(이하 "연맹")에 가맹, 등록된 프로구단과 프로선수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조정 절차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~~

<변경. 2018/01/15 개정>

제2조 조정사항적용범위

① 조정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구단과 선수 관련 분쟁
2. 구단과 구단 산하 유소년팀 소속 선수 관련 분쟁
3. 구단과 구단 관련 분쟁
4. 기타 연맹 이사회에서 조정위원회가 처리할 것을 의결한 사항

② 위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쟁이란 연봉, 이적료, 선수등록, 도핑, 임의탈퇴 등 선수 계약 및 연맹 규정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의미한다. <변경. 2018/01/15 개정>

~~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맹, 등록된 모든 프로구단과 프로선수에 적용한다.~~

제3조 조정신청

①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조정 수수료 5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연락처, 주소와 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가 명시된 조정신청서
2.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면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원본 또는 사본(단, 외국어 서류일 경우 공증번역을 받아 제출)
3.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, 주소가 명시된 위임장

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의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 사본 1부를 송부함으로써 이를 통지한다.

③ 연봉, 이적료, 보상금에 관한 분쟁 등 선수의 등록과 관련된 조정신청은 선수등록규정에 따른 등록 마감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 신청 후

선수등록기간이 경과되면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.

- ③ ~~시한을 요하지 않는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즉시 연맹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~~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선수 또는 클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기등록 마감일까지 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선수와 클럽을 당사자로 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⑤ ~~④~~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및 결정한다.

<변경. 2018/01/15 개정>

제4조 구성

조정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맹 부총재 또는 사무총장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~~사안 발생 시~~ 프로구단 대표자 3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며, ~~조정 대상 해당 구단의 대표자는 제외한다.~~ <변경. 2018/01/15 개정>
- ③ 위원은 축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자, 법률전문가(변호사), 학식과 덕망이 있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.
-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.

제5조 운영

-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조정결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,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단,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 조정결정의 효력

- ① 조정 결정은 연맹의 관할 범위내에서는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된다. 단, 도핑에 관한 사안은 국제규정에 따라 상소를 인정해야 할 경우 예외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조정 결정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7조 이의신청

- ①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, 연맹 조정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분쟁당사자는 연맹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,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는 해당자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8조 기타

- ① 비밀 누설의 금지 : 조정위원회 관련 모든 인원은 조정위원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② 절차의 비공개 :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③ 본 시행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.

제9조 시행일

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